

#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 기준

(사)한국제약바이오협회 공정경쟁팀

1. 목적 :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학술대회 대면 개최가 어려워짐에 따라 정부의 방역지침과 참석자들의 안전을 위해 공정경쟁규약의 예외를 두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

2. 적용기간 : 2020년 7월 1일 ~ 2021년 6월 30일까지 신청

## 3. 관련규정

### 1) 공정경쟁규약 제8조 (학술대회 개최·운영 지원)

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기관·단체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개최 및 운영을 기부, 식음료 제공, 기념품 제공, 부스 임대, 광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의료법」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「약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·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### 2) 공정경쟁규약 제15조 (전시·광고) 및 세부운영기준 제11조 (전시·광고) 등

## 4. 지원대상

1) 대한의사협회,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춘계·추계 정기 학술대회(단일 심포지엄, 전공의교육, 연수강좌 등 제외)

2) 「의료법」 제28조 제1항에 따른 의사회·치과의사회·한의사회,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또는 「약사법」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·대한한약사회 및 이들 협회가 승인·인정한 학회(해외학회 포함), 학술기관·단체 또는 연구기관·단체

※ 단,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‘산하단체’ 또는 ‘지회’를 비롯해 ‘개별 요양기관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## 5. 지원내용

### 1)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: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
- 신청기간 :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

※ 단,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 시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, 사안 별 재심의 진행

### 2)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: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

※ 외국인 참가자 인정 : 내한→온라인 참석 가능(공정위·복지부 유권해석)

### 3) 온라인 광고, 부스 (온라인 국내/국제학술대회 공통) :

- 인쇄물,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며, 온라인 광고, 부스 지원 조건 및 금액은 아래와 같이 적용

구분	웹사이트	인쇄물	온라인 광고	온라인 부스
구현방식	공식 홈페이지에 스폰서 로고 게재 및 자사 홈페이지 링크 연동	기관지, 학술지, 교육자료 등 인쇄물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의 전자문서	강의영상 플랫폼 안에 배너광고나 로고 삽입 또는 영상광고 삽입 등	홈페이지 또는 가상공간에 부스 기능을 다양한 형태로 구현하여 기업 및 제품홍보
규약	현행과 동일	<p>현행과 동일</p> <p>※ 예외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는 온라인 학술대회의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됨</li> </ul> <p>*3-1) 세부지원조건 참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1개당 최대 200만원(세금 제외)</li> <li>- 최대 60개까지 가능</li> <li>- 최대 40개 회사까지 가능</li> <li>- 회사당 2개까지 가능(단, 한 회사에서 2개를 할 경우 온라인 광고 1개, 온라인 부스 1개씩 가능, 똑같은 것 2개는 불가능)</li> </ul> <p>※ 온라인 광고 및 온라인 부스는 형태에 관계없이 구현 가능</p>	

-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(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)
-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택 1만 가능(중복 불가)
- 시행일 이후 온·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·부스 기준에 적용되며,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 시에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

### 3-1) 세부지원조건

-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·부스(오프라인 초록집 광고 제외)는 온라인 광고·부스 지원조건(최대 40개 회사, 수량 60개 이내)에 포함
-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·부스(초록집 등 오프라인 광고 포함) 지원 시, 회사당 최대 2개(각 1개), 최대 400만원(건당 최대 200만원)을 한도로 함
- 각각의 단일 광고·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
  - ※ 「의료법」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가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시: 의료기관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학술대회의 광고부스비는 규약 취지에 의거하여 더 낮은 상한금액인 기존의 기준(오프라인 광고·부스)을 적용
  - ※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,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(에시 - 웹사이트: 월 100만원, 전자문서: 70만원)를 준수해야 함
- 온·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 불가: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,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
- 기부금, 광고부스 중복지원 불가: 규약 제8조 학술대회 개최, 운영지원 기부금 중복하여 진행할 수 없음
  - ※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

### 3-2) 지원금 책정 기준

-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,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어 광고·부스비를 책정해야 함
- 학회는 배너, 중간,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,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
- 온·오프라인 병행 개최 시: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 적용
  - ※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(건당 200만원)으로 제한
  - ※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, 기존 금액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(규약의 형태별 광고한도 기준)
-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 시: 오프라인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(부스 당) 적용